

#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I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 1 제도의 의의

#### □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 제도운영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② 계획기간 및 근거규정

### □ 계획기간 : 2012~2016(5개년)

-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계획(Rolling Plan) 수립

###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 근거 법령 >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수립체계

####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방의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 수립 절차

- |          |   |
|----------|---|
| ① 행정안전부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시달                        |
| ②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
| ③ 지방자치단체 |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
| ④ 지방자치단체 |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br>▪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 |
| ⑤ 행정안전부  |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
| ⑥ 행정안전부  |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

## □ 수립 과정에의 외부참여 제도 활용 권고

### ① 외부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②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③ 지방의회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지방재정법제33조①, 동법시행령 제45조)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자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 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 Ⅱ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①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 방향 및 국가 주요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자원배분 방향과 연계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자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주민,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 ② 대상 및 작성 기준

□ 대 상 : 2012 ~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 작성 기준

○ ('12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2년도 최종 예산안을 반영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최종예산안 기준)와 의회제출(당초예산 기준)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3년도 이후) '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 「'11~'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 '12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11~'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투자 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11~'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  
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 3 계획수립 세부사항

#### 증기세입 전망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괄)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참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pm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되, 제도변경 요인,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12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2012년 세제개편내용>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11.3.22~'11.12.31)
  - 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2%, 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
-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부동산 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감면액 정비
  - 감면건의 7,850억원 중 4,384억원만 수용하고 나머지 3,466원은 감면 종료 및 불수용
    - ※지방공사(취득·재산100%→75%), 지식산업센터(취득세100%→75%), 리츠·펀드매입 미분양주택 감면 종료 등
- 대체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보상금수령일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
-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 지방세 감면 연장 시 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권 부여

## □ 의존재원 추계

- (총괄) 최근 의존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2011~201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고려
- (교부세) 국가경제 전망 및 세입 전망, 감세·감면제도 및 교부세제도 개편사항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확보실적을 고려하여 추계
  -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등을 감안하여 추계

##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원조달 계획을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

##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

---

### □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재정수지, 채무관리 수준,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 등

### □ 자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 및 자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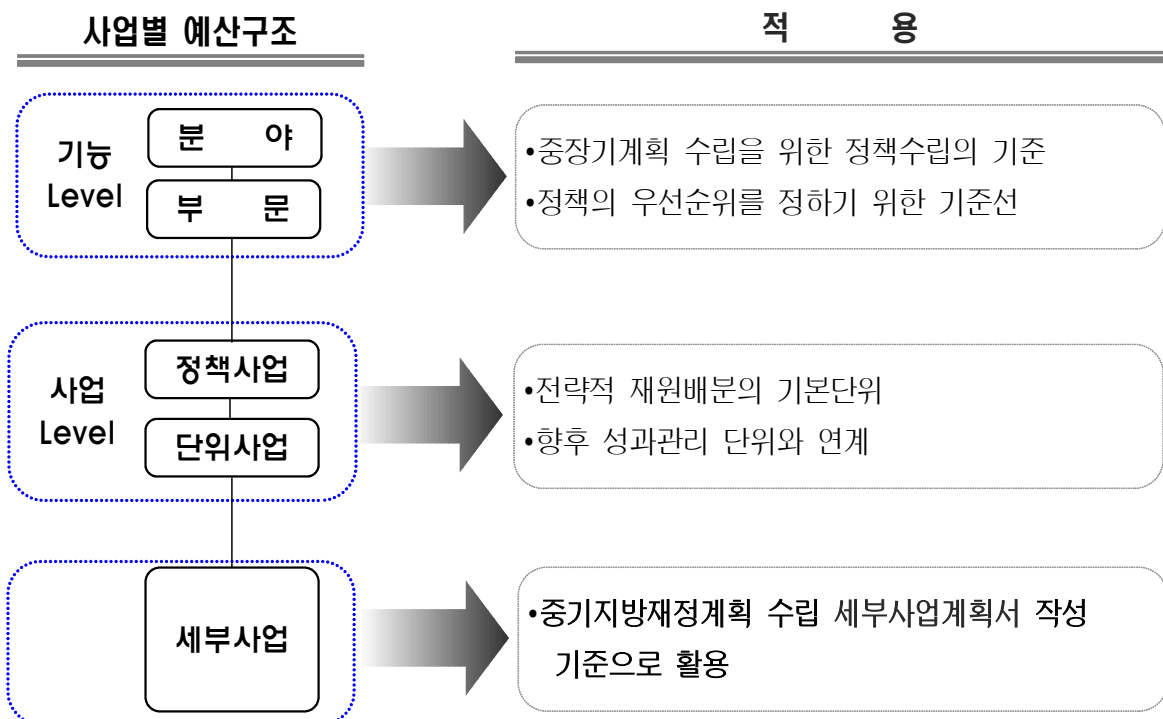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 기본 구성

- 정책방향 : 정책목표(5년 후),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
- 투자계획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단위로 기술

### □ 분야 분류체계

- 사업별 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 적용
  - 중장기 자원배분(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기능별 세출 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의 기능별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방예산제도간 연계성 강화
- 사업예산(사업구조화)의 단위사업내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활용



## 참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13개 분야	51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4 재정·금융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52 고등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3 체육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62 관광 064 문화재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수질 073 대기 075 해양	072 폐기물 074 자연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6 노동 088 주택	082 취약계층지원 085 노인·청소년 087 보훈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품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3 해양수산·어촌	102 임업·산촌
110 산업·중소기업	111 산업금융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2 산업기술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수송 및 교통	121 도로 124 해운·항만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23 도시철도 125 항공·공항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3 산업단지	142 지역 및 도시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3 과학기술일반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

##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 기준

-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아래표 <행정안전부에 제출 대상 사업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은 반드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
  - ┌ '12년 예산 3천억원 이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 '12년 예산 3천억원 미만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광역 5억, 기초 3억 이상(총사업비 기준)
- 외국차관 도입 사업, 해외투자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 광역 10억, 기초 5억 이상(총사업비 기준)
-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12~'16)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 **우리시 2012년도 당초예산규모 : 385,136백만원**

## □ 세부사업계획 작성방법

- 세부사업계획은 분야·부문별로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해서 입력하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경우 기투자,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교부세(일반, 특별, 분권)는 자체사업으로 입력
- 보조금은 광역에서는 국고 / 자체사업(시·도비 보조사업 포함)으로 입력, 기초에서는 국고 / 시·도비 / 자체사업으로 입력
-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
- 대상사업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사업비를 총액 계상하여 계획에 탄력성을 부여

---

## 중기 채무 전망

---

-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는 포괄하여 중기채무전망에 반영
- BTL 사업의 경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래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되므로 동일하게 적용

####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일정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li> </ul>	7월 중
↓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사업조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li> </ul> </li> </ul>	8월
↓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10.15)</li> </ul> </li> </ul>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의회 보고</li> </ul>	11월
↓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li> </ul>	'12.12월~ '13.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li> </ul>	'13. 2월
↓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회의 보고</li> <li>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li> </ul>	'13.3월